
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기능이 쇠퇴한 분야(전화상담)의 인력이 퇴직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: 1,287명 → 1,286명(감 1명) [안 제2조]
 - 집행기관 정원 : 1,268명 → 1,267명(감 1명)
 - 의회사무국 정원 : 19명 → 현행과 같음
- 나.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[별표 3]
 - 총 계 : 1,287명 → 1,286명(감 1명)
 - 일반직 계 : 1,033명 → 현행과 같음
 - 기능직 계 : 207명 → 206명(감 1명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1,287명"을 "1,286명"으로 한다.

제2조 1호 중 "1,268명"을 "1,267명"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종·직급별	기관별		본청	의 회 사 무 국	직속기관		사업소	읍면동
	계				보건소	농업기술 센 터		
총 계	1,286	-						
정무직 계	1	-						
시 장	1	1						
일반직 계	1,033	-						
3 급	1	1						
4 급	7	4	1	1			1	
5 급	62	24	1	3			9	25
6급 이하 계	962							
일반·별정 계	1	-						
5급 상당	1		1					
6급 상당 이하 계	-	-						
별정직 계	4	-						
5급 상당	-	-						
6급 상당 이하 계	4	-						
연구직 계	-	-						
연 구 관	-							
연 구 사	-	-						
지도·연구직 계	41	-						
지도·연구관	4					4		
지도·연구사	37	-						
기능직 계	206	-			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287명</u>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68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9명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286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267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2012. 9. 21 대통령령 24109호]

제4조(총액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2.29>

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8.2.29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

2008.2.29>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7.3>